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참 고 자 료**	http://www.motie.go.kr

배포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8. 6. 18.(월)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담당과장	정하늘 과장(044-203-5770) 채규남 과장(044-203-5860)	담 당 자	장재량 수석전문관(044-203-5772) 전성규 사무관(044-203-5861)

일본, 우리나라의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반덤핑조치에 대해 WTO 양자협의 요청

□ 일본은 6. 18.(월) 오전(제네바 현지시간), 우리 정부의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반덤핑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상의 협의를 요청했다.

□ 우리 정부는 지난 2004년 이후 일본, 인도, 스페인으로부터 수입하는 스테인리스 스틸바 제품에 대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왔으며,

* 원심('04~'09, 최고 15.39%) → 1차 재심(3년 연장(~13), 최고 15.39%)) → 2차 재심(3년 연장(~16), 최고 15.39%) → 3차 재심(3년 연장(~20), 최고 1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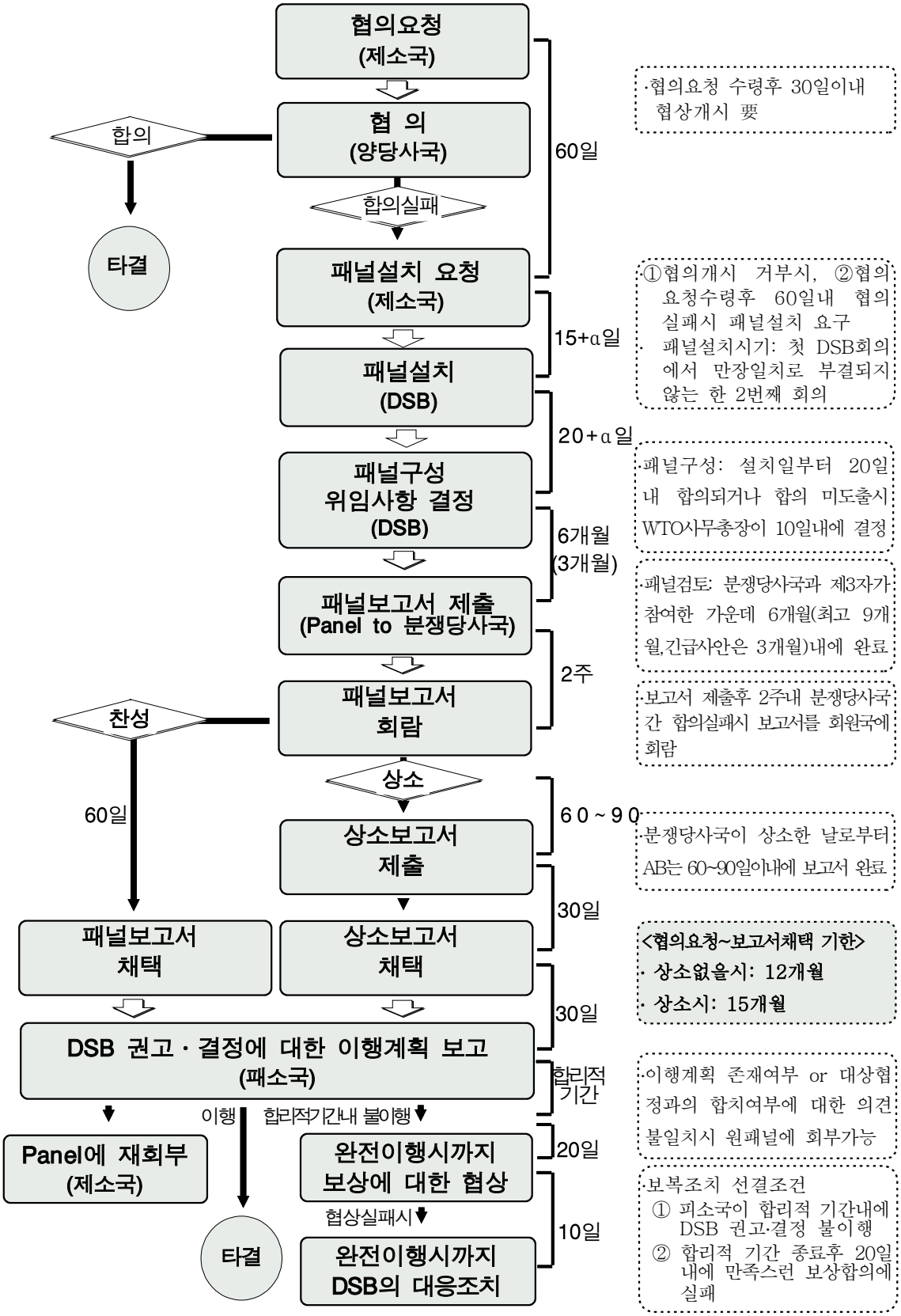
○ 무역위원회는 스테인리스 스틸바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부과 중인 관세의 유지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3차 재심을 지난 '16. 6월 개시해 '17. 3월에 관세부과 유지 필요성을 판정했다.

* 무역위는 관세부과 중지 시 일본 등 3개국 수입물품 증가에 따른 산업피해 '지속·재발' 우려를 인정하여 관세부과 유지(~15.39%)를 결정('17.3월 결정, '17.6 부과)

□ 일본은 무역위의 3차 재심 결과가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협의를 요청했으며, 정부는 향후 일본측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정부의 반덤핑조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일본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끝.

【붙 임】 WTO 분쟁해결절차도

붙임 **WTO 분쟁절차도**


협의요청
(제소국)
·협의요청 수령후 30일이내 협상개시 要
합의
협 의
(양당사국)
60일
합의실패
타결
패널설치 요청
(제소국)
①협의개시 거부시, ②협의 요청수령후 60일내 협의 실패시 패널설치 요구
· 패널설치시기: 첫 DSB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되지 않는 한 2번째 회의
15+α일
패널설치
(DSB)
20+α일
패널구성
위임사항 결정
(DSB)
·패널구성: 설치일부터 20일내 합의되거나 합의 미도출시 WTO사무총장이 10일내에 결정
6개월
(3개월)
·패널검토: 분쟁당사국과 제3자가 참여한 가운데 6개월(최고 9개월,긴급사안은 3개월)내에 완료
패널보고서 제출
(Panel to 분쟁당사국)
2주
·보고서 제출후 2주내 분쟁당사국간 합의실패시 보고서를 회원국에 회람
패널보고서
회람
찬성
60일
상소
60~90
상소보고서
제출
·분쟁당사국이 상소한 날로부터 AB는 60~90일이내에 보고서 완료
30일
패널보고서
채택
상소보고서
채택
<협의요청~보고서채택 기한>
· 상소없을시: 12개월
· 상소시: 15개월
30일
DSB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계획 보고
(패소국)
합리적 기간
·이행계획 존재여부 or 대상협정과의 합치여부에 대한 의견 불일치시 원패널에 회부가능
이행
합리적기간내 불이행
Panel에 재회부
(제소국)
완전이행시까지 보상에 대한 협상
20일
·보복조치 선결조건
① 피소국이 합리적 기간내에 DSB 권고·결정 불이행
② 합리적 기간 종료후 20일내에 만족스런 보상합의에 실패
협상실패시
타결
완전이행시까지 DSB의 대응조치
10일